(별첨자료)

정 관 일 부 변 경 (안)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이유
제13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결의로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	제13조(기준일) ① 삭제 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	- 코스닥협회 표준정관에 맞게 조항 정비
제44조(이익배당)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 ③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제42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.	제44조(이익배당) ① (현행과 같음) ②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, 그 경우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	-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, 이를 공고하도록 함